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7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주영 · 임호선 · 이학영
홍기원 · 소병훈 · 손명수
박홍배 · 박 정 · 전용기
김태선 · 노종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

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2항 전단 중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2.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③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및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납국세 열람 과정

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③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및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